

제22호(2016. 11.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이용선, 박한울



1. 조사 개요	1
2. 조사 결과	2
3. 시사점	5

감 수	김태곤 시니어이코노미스트		taegon555@naver.com
내용 문의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10월 21~23일까지 온라인 웹기반에 의거한 조사 실시
-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함.
 - 식사 접대 횟수가 40%~50%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 13.2%로 나타나 40% 이상 접대 감소 응답 비중은 총 61.8% 차지
-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짐.
 -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전체의 29.4%에서 64.5%로 증가하고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남.
- 접대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하고, 간편식품 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 법 시행 후 접대 감소를 대신하여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택하는 직장인이 37.3%로 나타남.
 -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 것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떡·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임.
-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됨.

청탁금지법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실시

1. 조사 개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직장인의 업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 실태에 대해 조사전문업체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10월 21~23일까지이며, 신뢰도 95% 수준에 표준 오차율은 ±5.39%
 - 조사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 1인 1회당 평균 식사 접대 금액,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대체 소비 형태 등임.
- 조사 대상 응답자는 직장 형태별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으로 가장 많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 등이 8.5% 순으로 많음.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고 부장급 25.2%, 이사/국장급 이상 12.7% 순임.¹⁾
 - 공직자 등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언론 및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포함
 - 월평균 소득은 400~600만 원 미만이 40.0%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가 51.5%임.

표 1.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연령	20대	2	0.6
	30대	83	25.2
	40대	170	51.5
	50대 이상	75	22.7
월소득	200만 원 미만	5	1.5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12	33.9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32	40.0
	600만 원~800만 원 미만	58	17.6
	800만 원 이상	23	6.9
직장형태	공직자 등	28	8.5
	대기업 및 중견기업	107	32.4
	중소기업 및 자영업	195	59.1
직급	과장/차장급	205	62.1
	부장급	83	25.2
	이사/국장급 이상	42	12.7

1) 업무 관련 식사 접대가 주로 과장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정함.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가 식사 접대 횟수 줄어

2. 조사 결과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빈도가 감소한 직장인이 73.6%를 차지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에 대한 응답자 비중은 월평균 1~2회가 71.2%, 5회 내외가 23.3% 순으로 많았음.
-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중이 73.6%로 높게 나타남. 직장인의 식사 접대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감소응답 비중이 높음.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식사 접대 횟수에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6.1%

그림 1. 시행 이전 월평균 식사 접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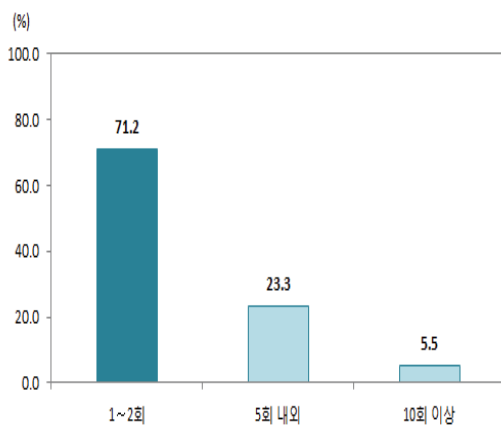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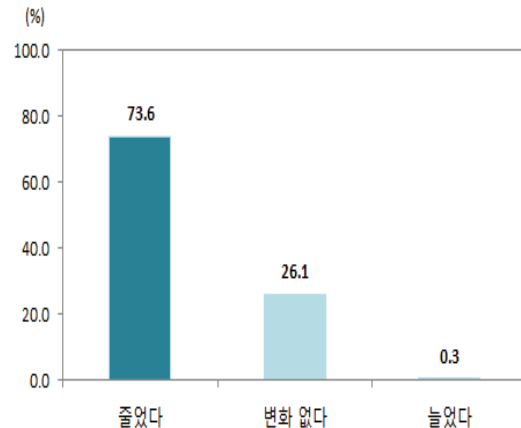


그림 2.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 변화



□ 법 시행 후 식사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중은 48.6%

- 직장인의 61.8%는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함.
 - 동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줄어든 정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48.6%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50% 미만이 13.2%, 10% 미만이 14.4%, 20~30% 미만이 8.6%, 30~40% 미만이 8.2%, 10~20% 미만이 7.0% 순으로 조사됨.
- 한편,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0.3%에 불과함
 -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어난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20% 미만이 가장 많았음.

1인당 식사 접대 비용은 3만 원 미만 위주로 크게 낮아져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은 3만 원 미만이 64.5%

- 식사 접대 시 1인당 평균 금액은 법 시행 이전에 3~5만 원 미만이 37.0%, 5만 원 이상이 33.6%로 3만 원 이상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24.9%로 크게 낮아짐.
 - 3만 원 미만의 식사 접대 비중은 법 시행 전 29.4%에서 시행 후 64.5%로 증가하고, 타 기관이나 직장 내 동료 간에 식사 접대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 비중도 10.6%로 나타남.

그림 3.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 줄어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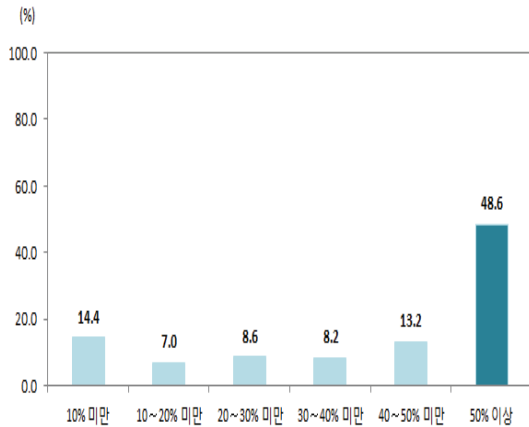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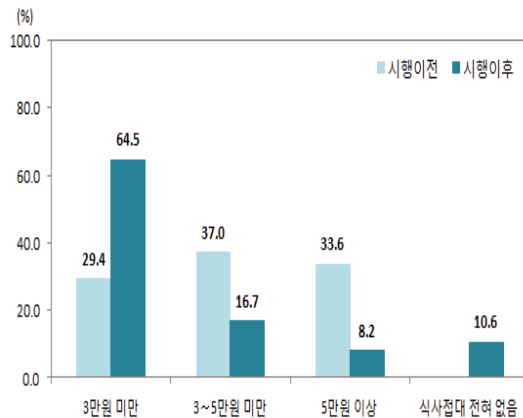


그림 4. 식사 접대 시 1인당 1회 평균 금액



□ 법 시행 후 접대 빈도가 감소하면서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37.3%로 나타남.
 - 접대 횟수 감소에 따라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식사(34.4%)하거나 가정 내 식사(21.7%), 가족과 외식(15.6%) 등 가족과의 식사(37.3%)가 증가
 - 배달·테이크아웃·도시락 등의 즉석식품으로 식사하는 비중은 5.9%
- 법 시행 이후에도 식사형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2.4%이며, 이들은 주로 직장 내 또는 주변 식당에서의 식사(76.1%)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 이전에도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은 23.9%

법 시행 이후 가정에서 식사 빈도 늘고, 간편식품 소비 늘어

□ 식사나 간식을 위해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 등 간편한 식품 지출 상승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또는 간식으로 지출이 늘어난 식품 종류는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이 19.3%로 가장 높고, 빵·떡·과자류가 17.3%, 과일·견과류가 15.8%로 나타남.
 - 주류 품목의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도 8.9%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음주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그림 5. 접대 횟수 감소에 따른 대체 소비 유형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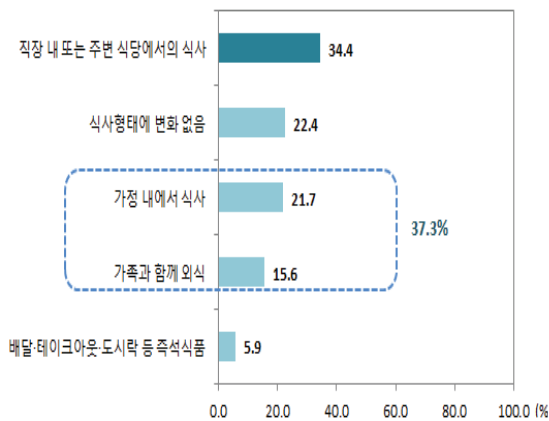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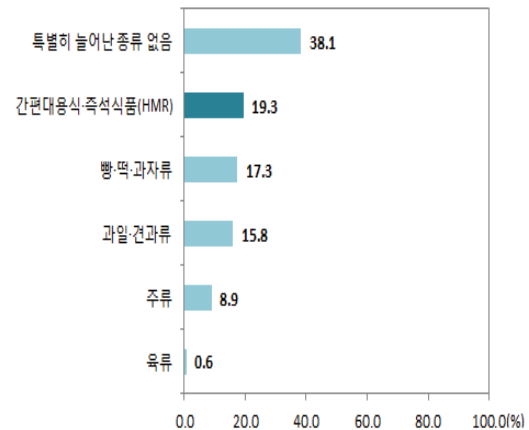


그림 6. 시행 이후 식사/간식 지출이 늘어난 식품 (중복응답)



- 법 시행 이후에도 식사 또는 간식 대응으로 특별히 지출이 늘어난 식품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38.1%로 나타남.
 - 지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식사나 간식을 위해 주로 구입하는 식품으로는 빵·떡·과자류가 4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이 29.9%, 과일·견과류가 18.8%, 주류는 5.2%, 기타가 1.2%로 조사됨.

3. 시사점

□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의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에 중대한 위협 요인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하고 1인당 접대 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식업에서는 객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해산물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식사 접대 수요는 위축되지만 일부 가족단위 외식이나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

□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외식업계와 농수산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외식업계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춘 실속형 메뉴의 개발·제공, 가족 단위나 직장인 대상의 차별화된 메뉴나 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업종 전환 등이 요구됨.
-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함. 특히 축산물(한우)과 수산물 수요 감소에 대한 농수산업계의 대응 노력도 요구됨.
-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간편대용식·즉석식품, 빵·떡·과자류 등 간편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식품업계는 이러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회로 삼아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농수산업 등 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됨. 신메뉴·서비스 개발 지원, 단기적 금융 애로 문제의 해결, 업종 전환 지원 등을 위한 대책 강구가 긴요함.³⁾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접대가 감소함으로써 외식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식사 접대 빈도나 금액의 감소는 부정청탁행위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고 접대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과 시간 절약을 통한 가정 생활의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도 시사함.

3)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주체들의 식사 접대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법 적용 기준·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KREI 현안분석 제22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1. 1.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